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12. 20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)

□ 제안이유

- 2010년 10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 개발과에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홍보 및 각종지원 업무를 수행할 뉴타운상담센터가 신설되어 운영됨.
- 시민지원센터에 상근인력을 운영할 경우 공무원 정원의 조정과 총액인건비제에 저촉되고, 충분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
- 또한, 도시분쟁위원회 발족으로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“동 조례 폐지”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p>○ 뉴타운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가급적 전문성을 고려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 했거나,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함</p> <p>○ 뉴타운사업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. 잘 대처하기 바람.</p>	<p>○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도정법 초기 도입단계부터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과 건축계열 시설직으로 건축인허가를 담당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.</p> <p>○ 1월중 상담유형별 및 주요 민원 사항별 분석을 통해 민원 상담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**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폐지조례안**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